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52
----------	-----

제출년월일 : 1996년 6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주체인 지방중소기업이 자금융통시 담보능력의 미약으로 겪고있는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 신용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운용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므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합원 구성은 일반조합원과 특별조합원으로 함(안 제5조)
- 나. 기본재산 조성은 일반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 특별조합원, 정부 또는 기타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보증료등 기타 수입으로 함(안 제6조)
- 다.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 1인, 감사 1인, 이사 8~10인으로 구성도록 함(안 제9조)
- 라. 조합은 기본재산의 관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와 조합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어음할인등 자금융통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지방비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조합은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재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2) 지방재정법 제15조(출자의 제한)
-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재보증)
- (4)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 2(재보증)
- (5)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7호의 나(적용범위)

나. 입법예고

- (1) 기간 : '96. 4. 13~5. 2(20일간)
- (2) 방법 : 대전광역시 공보게재, 유관기관 통보
- (3) 결과 : 별다른 의견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므로써 기업의 자금융통과 제품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인의 설립) 조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본재산”이라 함은 조합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3.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보증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의 채무”라 함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중소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다. 기타 중소기업의 금전채무

제 4 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 지역에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조합원) 조합은 일반조합원과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조합원은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일정액의 가입비를 납부한 자
2. 특별조합원은 시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경제단체, 중소기업유관기관, 단체 또는 제1호이외의 자로서 일정액이상을 출연한자

제 6 조 (기본재산조성) 조합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다.

1. 일반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
2. 특별조합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기타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보증료등 기타의 수입

제 7 조 (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해산시기 및 사유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설립의 등기)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9 조 (기구및임원등) ①조합에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임원은 이사장 1인, 감사 1인과 이사 8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 의결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10조 (업무)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2. 조합원의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등 자금융통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3. 조합원이 채무를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하는 경우에 당해 보증채무의 보증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 11조 (지방비의 출연) ①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의 일반회계나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시가 조합에 출연하는 기금은 조합의 경영평가등을 실시한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최초 설립시는 경영평가없이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12조 (재보증계약)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신용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3조 (이익금의 처리)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이월 손실금의 보전 및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한다.

제 14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15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6조 (검사및보고등) 시장은 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조합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신용보증기금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민 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공사, 지방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재보증) ①기금이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 재보증기간 재보증 요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 상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 금액은 원보증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 변제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제보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 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하며, 기타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간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재보증)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내용과 동일

□ 지방공기업법 제2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7. 경상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하는 사업

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